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2조)
- 예산 계상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안 제4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시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등 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8조 ~ 제17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9개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종전에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로도모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어 2021. 7. 13. 시행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지방보조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사업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 내용, 접수 기간, 재공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 외에 제4호에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등 4가지의 사유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 현황 보고와 공시,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으나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 제11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였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정투자사업 등 투자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게 한 것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기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던 것을 반영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
되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의자: 유승용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2조)
- 나. 예산 계상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안 제4조)
-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시 (안 제5조)
- 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등 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8조 ~ 제17조)
- 사.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10. 7. ~ 10.12.)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외의 자부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금 관련 소관 국·소장 2명 이상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퇴직 공무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

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을 같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중요재산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시군구비: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